

#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식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생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제품화 실증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① 사업 목적

- 푸드테크 신소재 및 스마트 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업화
- 세포배양식품의 기술 성숙도 단계별 실증을 통한 공정 단계별 요소기술 확보 (①소재개발 ②공정개발 ③제품 및 레시피 개발)
- 전문가 컨설팅 및 법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조기 사업화 촉진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② 사업 개요

- 공 고 명 :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11.30. 까지
- 총지원규모 : 총504,000,000원(금오억사백만원)
- 지원대상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 지원내용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규모	총지원 예산
실증 지원 (R&D)	소재개발	<input type="checkbox"/> <b>[소재개발] FOOD Grade 세포배양식품 소재개발</b> - 항생제, 성장촉진 등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 대체 단백질, 배양육 등 신소재 분석 및 실증 - 신규 식품 소재 개발 - 세포배양식품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TRL) 4~5단계	최대 100백만원 차등지원 (3개사)	504백만원 이내
	공정개발	<input type="checkbox"/> <b>[공정개발] 500 L 이상 대량배양 공정 개발</b> - 파일럿 및 준파일럿 대량배양 환경조건, 조성물 등의 조건확립을 통한 공정개발 - 자동화 솔루션 공정 최적화 실증 - 세포배양식품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TRL) 5~6단계	최대 40백만원에서 20백만원 차등지원 (3개사)	
사업화 지원 (비R&D)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b>[인허가 컨설팅] 설계부터 제품화 전주기 인허가 컨설팅</b> - 식약처 인허가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전문가 자문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인허가 문서 작성 컨설팅 - 제품 라벨링, 표시광고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 컨설팅	최대 40백만원에서 10백만원 차등지원 (5개사)	
	인증지원	<input type="checkbox"/> <b>[인증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b> - 개별 성분, 공정 잔류물 확인,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 - 최종 개발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평가 지원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 인증 지원	최대 40백만원에서 10백만원 차등지원 (3개사)	

※ 실증지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선지급), 사업화 지원(사업비 후지급)

※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하며, 고득점 기업부터 순위별로 차등 지원함

※ 실증지원(R&D) 사업비 지원항목 :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만 책정 가능
- 연구활동비는 외부 시험분석 의뢰비와 회계정산수수료만 인정

※ 자부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A+B)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B=지원금의 20%)
- (실증지원) 공급가액으로만 구성, 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화지원)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자부담은 부가가치세 제외

### ③ 지원 자격 및 조건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식품 및 푸드테크 전 분야)
-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 사업공고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 신청 제외대상

- 지원 분야 및 대상이 본 사업과 상이한 경우(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  
이과세자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청 제외)
-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업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  
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  
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혹은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 미비기업

※ 지원제외 적용 시점은 공고일 기준임

○ **가점사항** (최대 10점을 넘지 못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

- 입지 요건 관련 : 연구소 기업(3점), 첨단기술기업(3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1점)
- 우수기업 부설연구소(1점)
-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1점)
- CES, SWITCH 등 전시회 수상 경력(1점)

(※ 단순 참가전시·부스운영은 제외하며, 공식 주관기관이 발급한 수상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 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내 해당 사업공고
  -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http://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04.10.(금) ~ 2026.04.30.(목) 18시**

관리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담당자	바이오산업육성실	조미정 선임연구원	연락처 053-819-8137 053-819-8143
		이연지 연구원	
주 소	(38408)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연구동 1층		
E-mail	조미정 선임연구원	jmj0924@gbtp.or.kr	
	이연지 연구원	yj27@gbtp.or.kr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별지1) 참여신청서
	② (별지2-1호) 사업계획서(실증지원)
	② (별지2-2호) 사업계획서(사업화지원)
	③ (별지3)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약약서 (실증지원만 해당)
	④ (서식1)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⑤ (서식2)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
	⑥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
	⑦ (서식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⑩ 최근 2개년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해당시	⑪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2024년~2025년)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제출
	- 2025년도 결산 미확정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제출
	⑫ 공장등록증
	⑬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등
	⑭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 등
	⑮ <b>우대사항 증빙자료</b> (우대사항 적용 항목 참조, 증빙서류 확인 시에만 가점 부여)
	- 입지 요건 관련 : 연구소 기업(3점), 첨단기술기업(3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1점)
- 우수기업 부설연구소(1점)	
-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1점)	
- CES, SWITCH 등 전시회 수상 경력(1점)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료비, 외부시험·검사비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

※ 시험성적서는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

## 5 일정 및 평가

### ○ 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경북테크노파크(관리기관)	'26.04.
선정평가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26. 05.
선정결과통보	관리기관 → 선정기업	'26. 05.
과제협약체결	관리기관 ↔ 선정기업(협약기업)	'26. 05.
과제수행	협약기업	협약일~ '26.11.
모니터링(진도점검)	관리기관	'26. 07. ~ 08.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협약기업 → 관리기관	'26. 11.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26. 12.
성과조사	관리기관	종료 후 3년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항목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목표대비 타당성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40
	사업추진의 필요성	-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 지원내용, 범위, 일정 계획의 구체성	20	35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 총사업비(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 지원금액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사업화 활용계획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25
	부가가치 증대	- 고용 및 매출 증대, 투자유치액 등	10	
가점	가점사항	- 우대가점 참조	10	10
합 계			110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 시, 신청 접수 기업 중 우대사항 적용과 해당 기업 가점 부여
-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함
- ※ 종합 평점 7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 합격 기업으로 선정하고 포기 기업 발생 시 지원함
-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
- 신청기업의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실증지원 : 선정기업(협약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사업화지원 : 선정기업(협약기업) ↔ 공급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완료 보고서 제출

- **(실증지원)** 사업비는 협약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입금 또는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거래 내역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제출할 것

- **(사업화지원)** 사업비 지출 관련서류(품의서, 검수보고서, 거래명세서 등)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기업은 협약 마감일 15일 이전에 별지6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증빙서류는 협약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

○ 최종(종료)평가

- 협약기업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및 목표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종료)평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로 **70점 이상 이면 "성공", 70점 미만이면 "실패"**로 판정함
- 평가결과 "실패"로 판단된 과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기업 모니터링(중간실사)

- (현장점검) 사업 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적보고) 관리기관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재조치)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미흡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성과조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지원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조사를 지원기업에 요청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

- (변경 절차)

- 과제의 내용(협약기업의 주요변경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관리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문 및 변경 승인요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기관장은 지원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해 종래 협약서로 추진시 과제의 목표 달성에 애로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 단,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사업 목표 및 비용의 축소, 기간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첨부 서류 : [별지 5호] 변경승인 요청서

- (유의 사항)
  - 변경 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필요시 입증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협약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하였을 때,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
- 지원금 지급 관련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에만 해당)
  - (실증지원) 필수 서류 제출
    - 기업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사본** (사업비 관리 및 지출, 지원비 지급용)
    - **이행보증보험증권**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되어야 사업비 선지급 가능
      - ※ 협약 후 15일 이내 **기업부담금(민간부담금)이 입금확인** 후 해당기업에게 보조금을 선지급
    - [별지 4]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약속서
  - (공통사항)
    - [별지 4] 협약서 (관리기관에서 준비할 예정임)
    - [별지 6] 결과 보고서 (사업수행 완료 후)
  - 필요 시 제출 자료
    - [별지 5]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에만)
- 상세 내용은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관리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할 수 있음